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박수현・임오경・복기왕

위성곤 • 어기구 • 윤건영

임호선 · 정진욱 · 이개호

서삼석 • 박지원 • 신정훈

오세희 · 조계원 · 이재관

문금주 • 이광희 • 양부남

한병도 • 민형배 • 권칠승

최민희 · 황정아 · 이원택

송재봉 · 전현희 의원

(2691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 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,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.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. 또한,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.3%에 불과하는 등 식량자급 위기 상황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

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아울러 임산물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식 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안정 제도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배 제되어온 것이 현실임.

이에 주요 과일, 채소,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,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함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,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9조제5항 신설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다.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- 라.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

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(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 등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보장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,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(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

- 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보장제 도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, 채소, 과일, 목과류, 버섯류 등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,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차액의 지급비율(이하 "대상품목등"이라 한다)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 이 경우 대상품목등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16조의3(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대상 품목의 선정
 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
 - 3. 차액의 지급비율
 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 - 5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

하는 사항
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임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4. 그 밖에 농산물가격보장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성	생산자 보	. 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
호) ① ~ ④ (생	략)	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
		물 과잉생산 등 수급 상황에
		따른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
		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수립한
		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
		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⑤</u> (생 략)	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제16조의2(농산물가격보장제도)
	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
		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
		경영위험을 완화하고, 수급을
		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
		<u>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</u>
		제3항에 따라 확정・고시된 농
		산물(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
		이 조에서 같다)의 시장가격이
		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
		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
		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
		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상
		승률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 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 한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(기준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보장제도"라 한다) 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 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 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, 채소, 과일, 목과류, 버섯류 등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,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차액의 지급비율(이하 "대상품목등"이라 한다)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

<신 설>

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 이 경우 대상품목등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의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제16조의3(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대상 품목의 선정
 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<u>장가격</u>
 - 3. 차액의 지급비율
 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 - 5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
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

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한다.
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
- 2. 임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
- 3. 품목별
 생산자를
 대표하는

 단체에서
 추천하는
 사람
- 4. 그 밖에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 - 2 -----
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

을 위하여 지출한다.

1. ~ 2의2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3. ~ 5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2의3.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

행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